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8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5월 3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'기후동행카드 이용자'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감면요율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범위로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"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" 삭제
(안 제20조제1항제15호)
-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대상에 "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" 신설
(안 제20조제2항제3호 신설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0조(요금의 감면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1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	<p>제20조(요금의 감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<u>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(서울대공원, 서울식물원에 한한다)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0조(요금의 감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1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<u>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</u></p>

<u>2</u> · <u>3</u> . (생략)	<u>2</u> · <u>3</u> . (현행과 같음)	<u>3</u> · <u>4</u> 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③ · ④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</u></p> <p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